

假想空間에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小考

申鍾澈* · 高炯錫**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Cyber-Space

Jong-Cheol Shin · Hyung-Suk Ko

<목 차>

Abstract	IV.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內의 法令과 制度
I. 序 論	V. 結 論
II. 個人情報侵害의 類型 및 現況	參 考 文 獻
III.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動向	

Abstract

In the cyber-space contrary to the real world, an invasion of personal data occurs frequently. Theref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protecting personal data in the cyber-space by various legislations, and our country also is making legislative and systemic efforts. In this thesis, I examined our country's regulations and contents of system about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I suggested problem, supplementation for the problems and precaution against the damage.

I. 序 論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情報의 자유로운 전달을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個人情報의 收集 및 編輯을 容易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個人은 자신이 필요한 情報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자신에 관한 情報가 자신의 不知 속에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侵害될 수 있다. 만일 情報主體에 민감한 情報가 노출된 경우(個人的 性生活 또는 健康에 관한 情報, 信用情報, 金融情報 등)에는 情報主體에 대한 人格의 侵害 뿐만 아니라 財産의 侵害와 精神의 侵害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 韓國海洋大學校 國際大學 法學部 教授, 法學博士

** 韓國海洋大學校 國際大學 法學部 講師, 法學博士

에 대한 保護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國際機構를 비롯한 世界 各國은 假想空間에서 일어나는 各種의 個人情報侵害로 인한 情報主體의 被害를 豫防 및 救濟하고자 다양한 立法活動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個人情報를 보호하기 위하여 情報主體의 權利¹⁾를 강화하는 立法活動과 더불어 制度를 補完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假想空間에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的 動向을 분석하고 우리의 法令과 制度下에서의 保護內容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未備點을 지적하고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個人情報侵害의 類型 및 現況

假想空間은 個人情報의 收集과 利用이 容易한 반면에 消費者가 事業者의 個人情報의 誤用, 目的以外의 使用 및 第三者에게의 流出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事業者는 情報主體에게 과도한 個人情報를 요구하거나 收集된 情報를 目的以外에 사용하여 많은 消費者被害가 發生하고 있으며, 被害의 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2001년 6월까지 韓國情報保護振興院內에 설치된 個人情報보호센터에 接受된 被害現況을 살펴보면 他人 個人情報의 毀損·侵害·盜用이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情報의 受信, 個人情報 閱覽·訂正·削除 要求의 不履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

<표-1> 個人情報侵害 申告接受 類型 및 件數

類 型	2000/4~12	2001/1	2001/2	2001/3	2001/4	2001/5	2001/6
過度한 個人情報收集	6	0	0	0	0	1	1
利用者 同意없는 個人情報收集	138	20	19	16	19	14	7
個人情報收集時 義務告知事項 未履行	14	1	1	0	0	0	2
安全性 確保 未措置	8	0	0	0	0	0	2
同意없는 第三者 提供 및 目的外 使用	136	34	26	24	20	51	31
個人情報 收集 目的達成 後 未破棄	45	6	2	8	3	6	5
個人情報 閱覽, 訂正, 削除要求에 不應	152	60	55	81	54	56	56
원하지 않는 情報受信	325	43	71	72	376	224	177
他人 個人情報의 毀損, 侵害, 盜用	956	285	290	319	308	278	857
其 他	517	151	178	270	262	285	435
合 計	2,297	600	642	790	1,042	915	1,573

1) 조광희, 情報社會에 있어서 個人的 情報公開과 프라이버시 保護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中央大言論研究 第6輯, 1997·12, 156~162面. 個人情報에 관한 情報主體의 權利는 단순히 侵害의 禁止를 요구하는 消極的인 權利가 아닌 積極的으로 자신의 情報를 管理 및 訂正·削除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이다. 즉, 자신의 情報에 대한 提供與否를 결정할 수 있고, 提供된 情報가 당해 目的에 적절하게 利用되고 있는가와 事業者가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의 正確性 與否를 確認할 수 있으며, 만일 不正確한 情報를 事業者가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 個人은 이에 대한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할 수 있다.

2) <http://www.cyberprivacy.or.kr/indexd/indexd8.htm>.

1. 具體的인 被害事例

個人情報에 대한 侵害를 유발하는 代表的인 類型을 살펴보면, 먼저 情報主體의 同意없이 情報를 收集하는 경우, 둘째,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項以外에 過多한 情報의 要求, 셋째 情報管理者가 目的以外的 使用 또는 第3者에게의 無斷流出, 마지막으로 不正確한 또는 誤謬의 個人情報의 使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同意없는 情報收集

科學技術의 發展은 情報收集을 더욱 容易하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情報收集에 있어서 情報主體의 同意를 받지 않고도 收集할 수 있는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情報主體의 同意없이 무단으로 情報를 收集할 경우에 情報管理者의 任意로 情報를 活用할 수 있음과 더불어 情報에 대한 情報主體의 管理權(情報接近權, 訂正權, 削除權 등)을 有名無實하게 한다. 또한 情報主體의 不知 속에 자신의 일정한 情報가 事業者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個人이 假想空間의 쇼핑몰에 들어가면 電子商去來의 締結 與否와 關係없이 일정한 記錄이 쿠키³⁾의 形態로 남게 된다. 이러한 쿠키를 통하여 事業者는 자신의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의 수를 비롯하여 어떤 地域의 顧客인지, 顧客의 趣向 및 選好度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일 個人이 자신의 일정한 情報를 기입한 경우 쿠키에 저장되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나. 過多한 情報의 要求

消費者가 假想空間에서 쇼핑을 하거나 필요한 情報를 구하고자 웹서핑을 하는 경우에 事業者 등은 個人에게 會員加入 또는 일정한 情報의 提供을 요구한다. 이러한 情報提供의 範圍는 電子商去來의 締結이나 履行 또는 일정한 情報提供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內에 限定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目的과는 無關한 情報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과도한 情報提供要求는 추후 個人情報侵害의 主要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目的以外的 使用

事業者에 의하여 收集된 情報는 당해 目的의 範圍內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目的以外的 使用時에는 필히 情報主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目的以外的 使用은 內的 侵害와 外的 侵害로 구분할 수 있다. 內的 侵害는 事業者가 收集目的以外에 情報를 利用하는 것을 말하며, 外的 侵害는 個人情報가 外部의 第3者에게 流出된 것을 말한다.⁴⁾ 內的 侵害에 대하여 消費者가 接近權, 訂正權 및 削除權 등을 行使하여 侵害에 대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지만, 外部의 第3者에게 情報가 流出된 경우에

3) 김연수, 쿠키를 통한 온라인 추적과 個人情報侵害, 情報通信部, 2001·1, 4~6面. 쿠키란 쿠키를 提供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할 때 그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記錄되는 잘못한 情報를 말한다. 이 쿠키는 기본적으로 개인 ID와 秘密番號, 방문한 사이트 등의 情報가 합쳐져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情報를 주로 찾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事業者가 이를 利用한 타깃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쿠키는 사용자에게 쇼핑몰에 들어가 한번 ID와 秘密番號를 입력하면 동일 쇼핑몰의 다른 畫面으로 이동하여도 이를 다시 입력할 必要性을 감소시켜 준다. 쿠키에 記錄되는 情報는 컴퓨터 사용자가 쇼핑몰에 남긴 자취(姓名, 暗號, ID, 住民登錄番號, 신용카드번호 등), 쇼핑몰을 방문하면서 둘러본 페이지, 사용자의 검색패턴 및 배너 광고 등이 쿠키 프로그램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저장될 수 있다.

4) 柳煌彬, 디지털시대의 個人情報保護技術, 인터넷법률 第4號, 法務部, 2001·1, 64~65面.

는 情報使用者의 身元이나 目的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問題를 유발할 수 있다.

라. 不正確한 個人情報의 使用

個人的 情報은 한번 生成되면 變更되지 않는 것과 일정한 狀況에 따라 變動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즉, 姓名·性·住民登錄番號·出身學校 등에 관한 情報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變更되지 않지만 職業·收入·住所·學歷 등에 관한 情報은 수시로 변동한다. 특히 個人的 信用情報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最新의 情報로 變更하지 않고 중전의 記錄을 保有하게 된다면 不正確한 情報로 인하여 消費者에게 被害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與信專門會社가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會員의 資格에 대하여 별다른 制限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經濟能力이 없는 者에게도 쉽게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카드대금을 適期에 納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信用不良者⁵⁾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추후 대금을 완납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信用不良情報⁶⁾은 削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中전의 記錄을 계속 保有하게 된다면 消費者는 金融去來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活動에 많은 被害를 입게 된다.⁷⁾

III.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動向

1. 國際機構

가. 國際聯合

個人이 인터넷을 통하여 쿠키를 사용하는 가상공간 쇼핑몰을 방문한 경우에 電子商去來의 締結與否와 關係없이 일정한 個人情報가 남게 된다. 이러한 점은 事業者가 마케팅전략을 수립 및 상품 광고에 많은 利點을 부여하지만 個人에게는 個人情報가 자신의 意思에 의하지 않고 收集 또는 利用될 수 있다. 만약 個人이 假想空間의 쇼핑몰에서 電子商去來를 締結한 경우에 자신의 身元에 관한 情報를 적게는 姓名, 住所 및 電話番號에서 많게는 電子郵便 住所, 家族事項, 신용카드번호 등을 事業者에게 提供하게 된다. 이와 같이 收集 또는 提供된 情報를 事業者가 당해 去來의 目的에만 사용하고 추후 이를 削除하거나 안전하게 保有한 경우에는 問題가 없으나 事業者의 誤用, 無斷 流出 또는 第3者의 不法流出으로 인한 被害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保護의 必要性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UN에서는 1990년에 디지털화된 個人情報의 規制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⁸⁾

- 5) 信用不良者라 함은 金融去來 등 商去來에서 발생한 代金 또는 貸出金 등의 債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辨濟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第2條 7號).
- 6) 信用情報集中機關 또는 信用情報業者에게 信用不良情報를 등록하고자 하는 者는 同 事實을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信用情報業者는 信用不良情報를 集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信用情報提供·利用者의 通知義務 履行 與否를 확인하여야 한다(信用情報業監督規程 第12條 第1項).
- 7)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業者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信用不良情報는 不良解除事由의 發生日로부터 최장 5년의 기간내에서 관리하며, 登錄事由發生日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信用不良情報의 不良解除事由 發生日로 본다(信用情報業監督規程 第11條 第4項). 따라서 消費者의 信用不良情報를 保有하고 있는 者는 解除事由發生日로부터 최장 5년이내에 信用不良情報를 삭제하여야 한다.

(1) 디지털화된 個人情報의 規制에 관한 가이드라인

① 會員國 立法에 대한 原則

동 가이드라인은 모든 公的, 私的인 디지털 정보에 적용되며, 또한 選擇의 擴張 또는 適切한 調整을 통하여 手記로 작성된 情報에도 적용된다. 또한 個人에 대한 情報을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 法人에게도 原則의 一部 또는 全部를 選擇의 方式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會員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適用을 排除할 수 있다. 먼저 동 가이드라인의 合法性과 公正性의 原則, 正確性의 原則, 目的 特定性의 原則 및 關聯當事者의 接近의 原則에 대한 變更은 國家安全保障, 公共秩序, 公益 또는 他人, 특히 人道主義의 次元에서 迫害를 받는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變更은 原則의 制限과 適切한 保安을 公式의 方式으로 나타내는 國內 立法 節次에 따라 公表된 同等한 規制 또는 法에 公式의 方式으로 特定되어야 한다. 또한 差別禁止에 관한 原則의 變更은 上記의 事由以外에 國際權利章典 또는 人間の 權利와 差別禁止分野와 관련된 다른 機構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허용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6).

情報의 域外提供에 대하여는 關聯國家의 立法이 個人情報保護에 比較的 安全한 保安을 提供하고 있다면 情報은 關聯國家內에서 자유롭게 流通될 수 있다. 하지만 國家 相互間의 保安을 提供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流通에 대한 制限은 不當하지 않아야 하며, 個人情報保護에 대한 要請이 있는 경우로 한 정되어야 할 것이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9).

모든 會員國은 동 가이드라인의 遵守를 위하여 同 原則의 遵守與否를 監督하는 機構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機構는 情報 收集, 處理 및 技術能力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個人 또는 代理人과 利害關係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同 原則을 실행하는 國內法을 위반한 경우에 적절한 個人的인 原狀回復 뿐만 아니라 刑罰 또는 다른 制裁措置가 부과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8).

② 合法性과 公正性의 原則

個人에 관한 情報을 不公正한 또는 違法한 手段으로 收集 또는 處理하는 것은 禁止되며, 國際聯合憲章의 原則과 目的에 위배되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1).

③ 正確性의 原則

情報을 保存 또는 編輯의 責任者는 情報의 正確性과 記錄된 情報의 關聯性을 定期的으로 검토할 義務가 있다. 또한 管理者는 누락의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可能的 完全하게 情報을 保存하여야 하며, 定期的으로 또는 파일에 저장된 情報을 사용하는 경우에 最新의 情報로 유지할 義務가 있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2).

④ 目的의 特定性의 原則

개인정보파일이 提供 또는 利用되는 目的은 適法하고 特定되어야 한다. 즉, 收集 또는 記錄된 모든 個人情報는 특정된 目的에 關聯性이 있고 適切하여야 한다. 따라서 特定된 目的과 違背되는 目的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關聯當事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또한 個人情報는 특정된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期間을 초과하여 保存되어서는 아니 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3).

8)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1990(<http://www.unhchr.ch/html/menu3/b/71.htm>).

㉔ 關聯當事者 接近의 原則

個人情報를 提供한 사람은 누구든지 不當한 遲延 또는 費用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과 相關한 情報의 處理與否와 그 內容을 可讀性있는 形態로 받을 수 있는 權利가 있으며, 그 情報가 違法하거나 不必要 또는 不適切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適切한 修正 또는 削除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修正 및 削除에 관한 規定을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諸般 費用은 그 정보파일의 管理者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原則은 國籍이나 居住地에 關係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4).

㉕ 無差別의 原則

동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고 있는 適用排除事由를 除外하고 人種, 人種의 起源, 皮膚色, 性, 政治的 意見, 宗教上, 哲學上 또는 다른 信念 및 協會 또는 貿易機構의 會員 등을 포함하여 違法的 또는 獨斷的인 差別을 가져올 수 있는 情報의 編輯은 禁止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5).

㉖ 保安의 原則

갑작스런 滅失 또는 破壞와 같은 自然的인 危險과 第3者의 不法的인 侵入(해킹), 情報의 欺瞞的인 誤用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汚染과 같은 人爲的인 危險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A章 7).

나. 經濟開發協力機構

OECD는 國際機構로써 처음으로 電算情報處理에 있어서 個人情報保護에 대한 國際的 政策에 대한 論議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9월 23일에 '私生活保護 및 個人身上에 대한 데이터의 國家間 電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公式的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동 가이드라인은 會員國에 대하여 法的 拘束力을 갖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責任만을 부과하고 있다. 同 委員會에서는 會員國에 대하여 동 가이드라인에서 보장하는 個人的 自由와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原則을 國內法으로 制定할 것을 권장하며, 會員國이 個人情報保護라는 美名下에 個人情報의 海外流通을 阻害하는 障礙를 형성하는 것을 피하고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의 實行을 위하여 會員國에게 相互 協力할 義務를 부과하였다.⁹⁾

(1) 데이터의 國家間 電送에 관한 가이드라인

① 適用範圍

동 가이드라인은 公的, 私的 分野의 모든 情報를 비롯하여, 지역 컴퓨터망에서 세계적 컴퓨터망까지 個人情報의 電算處理를 위한 모든 媒體 및 모든 情報處理形態에 적용된다(동 가이드라인 第1章 2).

② 基本原則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個人情報의 處理를 규율하는데 있어 다음의 8가지 基本原則을 제시하고 있다.¹⁰⁾

9)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nventory of Instruments and Mechanisms contributing to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ECD Privacy Guidelines on Global Networks, Paris, OECD Publications, 1999 · 5, 10面.

10) ICCP, Implementing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 focus on the Internet, Paris, OECD Publications, 1998 · 9, 6~9面.

㉞ 收集制限의 原則

個人情報收集에는 반드시 限界가 있어야 하며, 收集의 方法은 合法的이고 公正하여야 한다. 또한 情報主體의 同意 또는 認識에 의해 情報收集이 허용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7).

㉟ 目的關聯性의 原則

個人정보는 使用의 目的과 關聯性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目的에 필요한 範圍內로 限定된다. 또한 個人정보는 精確하여야 하며, 항상 最新의 것으로 保存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8).

㊱ 目的의 特定化 原則

個人정보를 收集하는 目的은 情報收集時期, 目的達成에 制限된 追加의 使用, 目的과 矛盾되지 않는 追加的 使用 및 目的變更의 각 경우에 追加의인 使用이 지정된 時期보다 먼저 特定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9).

㊲ 使用制限의 原則

個人정보는 情報主體의 同意나 法에 의하지 않고 目的特定化의 原則과 관련하여 特定된 目的보다 다른 目的으로 사용되거나 流出되어서는 아니 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10).

㊳ 安全保護의 原則

個人정보는 滅失 또는 不法의인 接近, 破壞, 利用, 變更 또는 情報 流出을 防止하기 위하여 合理的인 保安裝置에 의하여 保護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11).

㊴ 公開性의 原則

個人정보와 관련한 政策과 慣行의 展開에 관하여 一般의으로 公開의 原則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情報管理者의 身元 뿐만 아니라 情報使用의 主된 目的 및 個人정보의 種類와 存在를 알 수 있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12).

㊵ 個人參與의 原則

個人은 情報管理者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情報를 保有하고 있는지 與否의 確答을 받을 權利가 있다. 또한 個人은 情報管理者로부터 合理的인 時間內에 低廉한 費用으로 읽을 수 있는 形態로 자신과 관련된 情報를 받을 權利가 있다. 만일 위와 같은 權利가 否定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異議를 제기할 權利가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情報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異議申請이 인정되었다면 情報의 削除 또는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13).

㊶ 責任의 原則

情報管理者는 上記의 原則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第2章 14).

다. 國際消費者機構

國際消費者機構(CI : Consumers International)는 全世界 個人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0여개국 260여개의 個人 團體 및 機構가 가입하고 있다.¹¹⁾ 이 機構의 主要活動內容으로는 먼저 消費者의 8가지 基本的 權利¹²⁾에 대하여 制定하였으며, 國際機構 뿐만 아니라 個別國家

에 대하여 個人保護에 관한 政策의 樹立 및 立法의 制定과 保護 水準의 向上을 추구하고 있다.¹³⁾ 최근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電子商去來에서의 個人保護問題에 중심을 두고, 電子商去來의 現況과 個人과 관련된 問題點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補完策을 제시하고자 OECD를 비롯한 國際機構에 個人保護의 重要性和 世界的인 規範의 制定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국제소비자기구는 가상공간에서의 個人정보침해의 現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Privacy@net 調查報告書(以下에서는 個人情報保護 報告書라고 함)를 발표하여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勸告事項을 제시하였다.

(1) 調查報告書의 目的과 調查方法

同 調查報告書는 가상공간 쇼핑물 의 個人情報保護에 대한 現況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 14개의 個人機構가 751개의 쇼핑물(주로 美國과 유럽연합)에 접속하였으며, 그 對象은 個人이 情報을 검색 또는 商品을 구입할 때 다양한 個人情報를 요구하는 쇼핑물을 주로 하였다. 調查對象이었던 쇼핑물을 분류하면, 소매 쇼핑물, 금융 쇼핑물, 건강관련 쇼핑물 및 유명하거나 個人이 자주 利用하는 쇼핑물로 구분되며,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쇼핑물을 분리하여 調査하였다.¹⁴⁾

(2) 調查報告書의 結論

가상공간 쇼핑물의 大多數가 個人의 個人情報를 收集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極少數의 쇼핑물만이 個人에게 그 情報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美國의 대부분 쇼핑물은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的 基準를 遵守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쇼핑물들은 公正한 情報使用에 관한 가장 基本的인 原則인 情報使用의 目的, 接近可能性, 個人의 選擇權, 情報의 保安性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事業者의 無視는 情報의 使用과 收集에 관한 技術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고 同 報告書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¹⁵⁾

(3) 勸告事項

현재 많은 쇼핑물이 基本的인 公正한 情報原則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 뿐만 아니라 國際機構의 政策立案者는 個人이 자신의 情報에 대하여 적절하게 保護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迅速한 行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個人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하여 다음의 原則들은 쇼핑물 內部的 慣行과 國家의 立法에 반영되어야 한다.¹⁶⁾

11) www.consumersinternational.org/about/history.html.

12) 個人의 8가지 基本的인 權利는 케네디 權利章典에 포함되어 있는 安全에 대한 權利, 競爭價格으로 다양한 서비스나 商品을 선택할 權利, 情報에 관한 權利, 個人政策樹立에 있어서 個人의 意見이 반영되어야 할 權利를 포함하여 被害救濟, 個人 教育, 基本的인 需要에 대한 充足과 環境에 대한 權利를 말한다 (www.consumersinternational.org/about/rights.html).

13) 대표적 立法內容으로 1985년 4월 16일 UN에서 制定된 個人保護에 관한 UN가이드라인(UN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과 1999년 6월에 制定된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서의 個人權利 保護를 위한 모델법(Model Law for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있다(www.consumersinternational.org/about/movement.html#cprot).

14) Kate Scribbins, Privacy@net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Consumer privacy on the internet, London, Consumers International, 2001 · 1, 17~19面.

15) Kate Scribbins, supra note, 6~7面.

16) Kate Scribbins, supra note, 8~10面.

① 個人情報收集

收集되는 情報은 去來에 必須的인 內容에 한정되어야 한다. 去來에 不必要한 情報은 반드시 選擇의 이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表示하여야 한다. 情報은 타인으로부터 收集을 인정하는 當事者의 同意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當事者로부터 직접적으로 收集되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情報收集은 公正하고 合法的인 方法으로 收集되어야 하고 個人의 인식없이 자동적으로 情報가 收集되는 경우에 쇼핑몰은 이를 個人에게 告知함과 더불어 使用用度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② 個人情報의 利用 및 流出

個人情報은 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事前同意가 없는 한 收集目的에만 利用되어야 하며, 目的達成에 필요한 기간동안만 保存되어야 한다. 만일 쇼핑몰이 個人情報의 利用 또는 流出에 選擇權을 提供하였다면 個人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쇼핑몰이 파산을 하여 다른 쇼핑몰 또는 새로운 쇼핑몰이 인수하는 경우에, 새로운 쇼핑몰에 대한 情報의 提供前 個人으로부터 同意를 얻어야 한다. 만일 個人으로부터 同意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關聯資料를 削除하여야 한다. 이러한 쇼핑몰의 義務는 個人情報를 직접 收集한 쇼핑몰 이외에 個人의 個人情報를 수령한 모든 쇼핑몰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個人의 接近

쇼핑몰은 個人에게 그에 관한 情報에 대하여 迅速하고 아무런 부담없이 접근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第3者의 無斷接近을 防止하기 위하여 本人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措置가 더 많은 個人情報를 습득하기 위한 道具로서 利用되어서는 아니 된다. 個人은 情報의 正確性과 無缺性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쇼핑몰은 個人에게 情報의 修正 및 削除에 관한 事項을 알기 쉽게 提供하여야 한다.

④ 保安

쇼핑몰은 안전한 方法으로 情報가 收集, 保存 및 電送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行政的, 技術的 手段을 강구할 義務가 있다. 이러한 保安水準은 收集된 情報의 質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監督 및 不滿處理

쇼핑몰의 事業者는 個人이 迅速하게 接近할 수 있는 個人情報處理에 關한 政策과 慣行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쇼핑몰의 事業者는 個人情報의 運營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個人의 個人情報保護原則의 遵守를 담당하는 責任者를 임명하여야 하며, 個人은 이들에게 個人情報保護原則과 關한 異議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國家는 이의 遵守를 監督할 獨自的인 機構를 설립하여야 하며, 違反行爲에 대한 制裁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被害救濟

個人은 迅速, 公正하며 低廉한 費用으로 독립된 紛爭解決機構를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政策立案者는 國際的인 狀況에서 被害救濟의 問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 쇼핑몰 사업자의 個人情報保護政策

利用者로부터 情報를 收集하는 모든 쇼핑몰의 事業者는 情報에 대하여 명확하게 表示된 個人情報保

護의 方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方案의 內容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個人情報를 收集하는 모든 畫面에 명확하고 분명한 方法으로 表示되어야 하며, 그 內容은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方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方案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內容이 첨가되어야 한다.

- ㉞ 쇼핑물을 運營 또는 所有하는 者의 身元
- ㉟ 收集되는 情報의 種類
- ㊱ 情報收集의 理由와 用度
- ㊲ 情報共有者가 있는 경우에 共有者의 身元 및 情報共有에 대한 個人의 選擇權
- ㊳ 情報保存의 期間
- ㊴ 情報에 대한 保安性
- ㊵ 情報에 대한 接近, 修正 및 削除 方法
- ㊶ 쇼핑물의 政策變化與否
- ㊷ 情報保護에 대한 責任者와의 契約 事項
- ㊸ 關聯 監督機關의 情報

㉞ 個人의 注意

個人은 쇼핑물에 個人情報를 提供하기 전에, 특히 外國의 쇼핑물에서 電子商去來를 締結할 때에 반드시 個人情報保護政策의 存在와 內容을 確認하여야 한다.

㉟ 兒童保護

事業者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기타의 第3者의 情報提供을 要請하여서는 아니 되며, 쇼핑물의 利用의 前提로서 情報提供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不明確한 手段(예를 들어 調査)을 통하여 어린이로부터 情報收集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世界 各國

가. 美國

(1) 個人情報保護關聯 法令

美國 憲法에서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지만 判例에서는 憲法이 물리적인 프라이버시의 侵害 또는 일정한 行爲를 制限한 점과 관련하여 일정한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¹⁷⁾ 현재 이러한 個人情報保護와 관련한 聯邦次元의 法令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聯邦政府機構가 遵守하여야 할 個人情報利用을 규율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 1974)이 있다. 同法은 情報主體에게 金錢上의 損害 또는 禁止된 削除에 대한 訴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違反者에 대하여 刑罰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不公正 또는 欺瞞的인 去來慣行을 규율하는 聯邦去來委員會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1914), 電子의으로 通信되는 情報의 使用을 규율하는 電氣通信保護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 1986), 컴퓨터자료의 상호 비교와 프라이버시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Act : 1988), 원하지 않은 電話通話를 규율하는 電話個人保護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 1991), 父母의 同意없이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

17) 金日煥, 美國 個人情報保護法規에 관한 研究, 美國憲法研究 第10號, 美國憲法學會, 1999, 339面.

여 兒童의 個人情報를 收集하는 行爲를 규율하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1998) 등이 있다.¹⁸⁾ 또한 정보통신기반 전담팀인 情報政策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그 下部 組織인 프라이버시 작업반이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提供 및 利用의 原則을 작성하였다. 이 原則은 契約의 接近 方法에 의하여 提供者의 通知와 個人的 同意라는 두 개의 必修要件을 基盤으로 하여 業界의 自律的인 規制를 優先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¹⁹⁾

(2) 세이프하버원칙(Safe Harbor Privacy Principle)

美國 역시 國際機構 및 다른 國家와 동일하게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國家의 次元의 立法을 통한 規制를 最小化하고 自律的인 規制를 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國家, 특히 유럽연합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美國內 企業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美國으로 個人情報를 電送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適切한 基準²⁰⁾의 意味에 대한 不確實性을 表明하였다. 이에 이러한 不確實性을 배제하고자 세이프하버원칙이 제시되어 2000년 7월에 美國 商務部에서 채택되었다. 同 原則은 制定背景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에서 個人情報를 美國으로 電送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²¹⁾

① 告知

企業은 情報主體에게 收集과 利用의 目的, 企業에 대하여 要求와 不滿을 제시할 수 있는 方法, 情報가 提供되는 第3者의 類型, 選擇權, 情報의 使用과 第3者에 대한 提供를 制限할 수 있는 手段을 반드시 告知하여야 한다. 이러한 告知는 企業이 個人에게 情報提供를 要請할 때에 명확하고 명백한 言語로써 제시하여야 한다.

② 選擇權

企業은 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與否 및 본래의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使用의 認定與否에 관한 選擇權을 個人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個人은 選擇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즉시 利用可能하며, 效率的인 手段을 提供받아야 한다.

③ 第3者 情報提供

企業은 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함에 있어 반드시 告知와 選擇의 原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企業이 第3者에게 情報를 提供하고자 할 때, 第3者가 同 原則, 指針, 다른 適切한 事實認定 및 최소한 관련된 原則에서 요구하는 個人情報保護와 동등한 水準의 保護를 인정하는 書面合意를 준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第3者가 禁止된 方法으로 情報를 利用한 경우에 企業은 免責되지만, 企業이 이를

18)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bid, 47~48面.

19) 宋東洙, 情報化社會에서의 個人情報保護, 法學論叢 第24輯, 檀國大學校 法學研究所, 2000, 16面.

20)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31995L0046).

Article 25 (6) The Commission may fi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31 (2), that a third country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reason of its domestic law or of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particularly upon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ves and basic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21) <http://www.export.gov/safeharbor/SHPRINCIPLESFINAL.htm>.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中止시키거나 禁止할 수 있는 合理的인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④ 安全性

企業이 個人의 情報를 收集, 保存, 利用 및 流布함에 있어서 情報를 滅失, 誤用, 不法인 接近, 流出, 變更 및 破壞에 대하여 合理的인 注意를 하여야 한다.

⑤ 情報의 無缺性

個人情報는 利用目的과 關聯性이 있어야 한다. 企業은 收集된 目的과 다른 방식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하여서는 아니 되며, 目的達成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個人情報가 正確, 完全, 最新의 것이라는 확증할 合理的인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⑥ 接近

情報主體는 企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情報에 接近할 수 있으며, 情報가 不正確한 경우에 訂正 또는 削除를 할 수 있다.

⑦ 執行

效果的인 個人情報保護를 위하여 이 原則을 위반하는 個人과 企業에 대하여 制裁를 부과할 수 있는 機關이 필요하다. 이 機關은 情報主體가 쉽게 利用할 수 있으며, 不滿이나 紛爭을 調査하고 解決할 수 있어야 하며, 被害를 補償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同 原則의 違反에 대한 制裁는 企業의 遵守를 確保할 수 있도록 엄격하여야 한다.

나. 유럽연합

(1) 個人情報處理 및 個人情報의 자유로운 流通에 관련된 個人情報指針

① 制定背景

個人情報處理와 관련하여 會員國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의 自由와 權利, 특히 프라이버시보호의 水準에 있어 差異點은 한 會員國에서 다른 會員國으로의 個人情報의 電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差異點은 共同體 水準에서 經濟活動의 追求에 障礙가 되며, 競爭을 沮害하고 情報電送을 하는 者의 責任을 면제하려는 會員國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差異點은 다양한 國家의 法, 規制, 行政法規에 기인한다. 따라서 個人情報의 流通에 障礙物을 除去하기 위하여 個人情報處理와 관련한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保護하는 水準은 모든 會員國內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이 障礙物은 共同體市場에 致命的이고, 이의 除去는 어느 한 會員國의 努力만으로 될 수 없다. 특히 關聯 會員國法의 廣範圍한 差異點과 個人情報의 자유로운 流通을 보증하는 會員國法 사이 協力の 必要性和 관련하여 持續的인 方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共同體 次元에서 立法의 必要性에서 유럽연합 조약 第 F條와 人間의 權利와 基本的 自由의 保護에 대한 유럽 협정 第8條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은 個人情報處理 및 個人情報의 자유로운 流通에 관련된 個人情報指針²²⁾(이하에서는 '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이라고 함)을 制定하였다.²³⁾ 同 立法指針의 立法義務에 따라 會員國은 이에 관한 國內法을 個人情報指針의 發

2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31995L0046).

23) http://europa.eu.int/smartapi/cgi/sga_doc?smartapi!celexapi!prod!CELEXnumdoc&lg=EN&numdoc=

效以後 3년 이내에 制定하여야 한다(個人情報指針 第32條).²⁴⁾ 이러한 個人情報指針은 第3國으로의 情報流出時 適切한 保安水準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基準 適合성과 관련하여 美國과의 마찰이 發生함에 따라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後續措置를 발표하였다.²⁵⁾ 즉, 이 指針의 國內法化로 인하여 유럽 연합에서 美國으로 個人情報를 電送하는 企業들은 個人情報指針 第25條의 적절한 保安水準의 意味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美國 商務部와 유럽연합 위원회는 2000년 7월 26일에 유럽에서 美國으로 유럽연합 시민의 個人情報를 電送하는 경우에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이 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25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保安水準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²⁶⁾

② 指針의 內容

㉠ 個人情報處理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個人的 情報은 情報主體가 明確한 同意를 하였거나 契約 締結前 情報主體의 要請에 따른 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情報主體가 一方當事者인 경우에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處理될 수 있다. 또한 情報處理管理者가 준수하여야 할 法的 義務와 相關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政府의 重大한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處理될 수 있으며,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또는 情報가 제공된 第3者 또는 管理者에게 소속된 公式 機構의 業務執行에서 수행하는 일의 完成을 위하여 情報은 處理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管理者, 第3者 또는 情報를 유통한 者의 合法的인 利益을 달성하기 위하여 情報處理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 情報主體의 自由와 基本的인 權利에 대한 利益을 과도하게 制限하여서는 아니 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7條).

㉡ 情報處理의 原則과 制限

정보는 公正하고 合法的으로 處理되어야 하고, 情報收集의 目的은 特定·明白·合法的이어야 하며, 이러한 目的과 반대로 收集되어서는 된다. 하지만 歷史的, 統計的, 科學的인 目的을 위한 情報處理는 會員國이 적절한 保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個人情報는 정확하고 항상 최신의 것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收集 또는 處理의 目的과 相關하여 不正確하고 不完全한 情報는 削除되거나 修正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6條).

㉢ 情報處理의 機密성과 安全性

정보處理者 또는 管理者의 지시를 받는 者와 情報處理者는 法이 허용하지 않는 한 管理者의 指示 없이 情報를 處理할 수 없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6條). 會員國은 갑작스런 또는 不法的인 破壞 또는 不時的 損失, 變更, 權限없는 者의 情報流出 또는 接近 등 모든 不法的인 情報處理形態로부터 個

31995L0046& model=guichett.

24) 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에서는 유럽연합내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統一의 基準을 제시하기 위하여 制定되었지만, 個別 權利와 義務에 대한 例外 및 制限에 관한 規定(個人情報指針 第13條)을 두어 實質的으로 유럽연합내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 統一이라는 원래의 目的과는 약간의 차이를 발생하였다 (Masons, Handbook on Cost Effective Compliance with Directive 95/46/EC,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studies/handbook.pdf, 1998 · 8, 7~8面.).

25) 2000/520/EC: Commission Decision of 26 July 2000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safe harbour privacy principles and 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300D0520); 2001/497/EC: Commission Decision of 15 June 200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under Directive 95/46/EC.

26) Michael M. Sax,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Toronto, OSGOODE HALL LAW SCHOOL, 2000 · 5, 39~41面.

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하여 적절한 技術的, 組織的인 手段을 管理者가 취하도록 해야 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7條).

㉔ 情報蒐集時 情報主體에게 提供하여야 할 情報

㉔-1 情報主體로부터 情報를 收集할 경우

管理者 또는 그 代理人이 情報를 收集할 때 情報主體에게 自身の 身元, 情報處理의 目的과 그 의 關聯情報(受領人 또는 情報受領人의 目錄, 質問에 대한 答辯이 義務的인지 또는 選擇的인지 與否와 答辯拒絶時 結果, 情報의 接近 또는 修正權 등)를 提供하여야 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0條).

㉔-2 情報主體가 아닌 者로부터 情報를 收集할 경우

情報主體가 아닌 者로부터 情報를 受領한 경우에 會員國은 管理者 또는 그 代理人이 情報를 수령한 時點 또는 第3者에게 제공할 때에 情報가 처음으로 제공되기 전까지 情報主體에게 管理者 등의 身元, 情報處理의 目的과 기타의 情報를 提供할 義務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規定은 統計的, 歷史的, 科學的 調査를 위한 情報收集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情報提供을 規定하는 것이 不可能하거나 不必要한 경우 또는 記錄이나 流出이 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會員國은 情報에 대한 적절한 保安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1條).

㉕ 情報主體의 權利

㉕-1 情報接近權

모든 情報主體는 管理者에게 強制 또는 지나친 遲延이나 과도한 費用의 支拂없이 자신과 관련된 情報가 處理되고 있는가 與否와 情報處理의 目的, 情報의 目錄, 情報의 流出時 受領人에 관한 情報를 要求할 수 있는 權利, 자신의 資料에 관하여 利用할 수 있는 모든 情報와 處理가 進行중인 情報를 인식할 수 있는 形態로 提供받을 權利 및 특히 情報가 不完全하고 不正確하기 때문에 이 指針의 規定과 一致하지 않는 情報의 削除 또는 修正할 수 있는 權利가 있으며, 情報를 提供받은 第3者에게 上記의 權利實行으로 인한 修正 또는 削除를 通知할 수 있는 權利가 있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2條).

㉕-2 情報拒絶權

情報主體는 管理者의 직접적인 마케팅목적을 위한 情報處理에 대하여 拒否할 權利 또는 第3者에게 情報가 提供되기 前에 情報提供에 관하여 告知받을 權利가 있으며, 情報의 提供과 使用에 대하여 無料로 拒否할 權利를 명백하게 提供받을 權利가 있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14條).

㉖ 法的 救濟方案, 報償請求權 및 制裁措置

모든 情報主體는 情報處理에 적용되는 國內法에 의하여 부여한 權利의 侵害에 대하여 司法的 救濟를 받을 수 있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22條). 不法的인 情報處理 또는 同 指針에 의한 國內法 規定에 不一致하는 모든 行爲로 인하여 情報主體가 被害를 입은 경우에 情報主體는 管理者에게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管理者에게 被害에 대한 責任이 없는 경우에는 그 一部 또는 全體의 責任이 免除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23條). 會員國은 이 指針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적절한 手段을 강구

하여야 하며, 특히 同 指針에 따른 規定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制裁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24條).

㉔ 第3國으로의 個人情報電送

第3國으로의 個人情報提供은 第3國이 個人情報保護에 적절한 水準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保護水準의 適正性은 情報電送을 둘러싼 모든 要素, 특히 情報의 性質·目的과 제시된 情報處理의 期間·情報의 生成國家와 最終傳達國家·一般法과 特別法의 規定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會員國과 共同體 委員會는 적절한 水準의 保護措置를 강구하지 않는 第3國에 대한 情報의 提供을 禁止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委員會는 적당한 時期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第3國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 委員會는 일정한 節次를 통하여 第3國이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적절한 수준을 國內法, 第3國이 認准한 國際合意 또는 人間의 權利와 基本的인 自由와 私生活의 保護를 위한 上記의 協商의 結果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 第25條).²⁷⁾

IV.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內의 法令과 制度

1. 法令上の 個人情報保護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우리 나라의 法令은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個人정보를 保管하고 있는 機關 또는 情報의 類型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즉, 公共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個人정보에 대하여는 1996년에 制定된 公共機關의 個人정보保護에 관한 法律이 적용되며, 情報通信網上の 個人정보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이, 信用정보는 信用정보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이, 通信秘密은 通信秘密保護法이, 金融去來정보는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이 적용된다. 따라서 假想空間에서의 個人정보는 기본적으로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중 個人정보의 保護에 관한 章의 適用을 받는다. 또한 同法의 內容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²⁸⁾에게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個人정보保護指針을 制定하였으며, 이후 2002년 1월 이를 수정·보완하여 고시하였다.

가. 個人정보의 收集

事業者가 個人으로부터 個人정보를 收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事전에 個人으로부터 同意를 얻어야 한다. 事業者가 個人에게 同意를 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個人정보管理責任者의 姓名·所屬 部署·職位 및 電話番號 기타 連絡處, 收集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게 提供하는 경우에 提供받는 者, 提供目的, 提供할 情報의 內容, 個人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撤回權, 閱覽權, 訂正權 및 行使方法, 收集對象의 個人정보, 情報의 保有期間 및 利用期間 등을 個人에게 告知하거나 利用約款에 명시하여야 한다(情報

27) 유럽 공동체는 2000년 7월 26일 委員會決定으로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이 적절한 保安水準을 제시하는 것으로 決定하였다(Commission Decision of 26 July 2000. Article 1).

28) 同 指針에서는 個人정보保護義務 賦課對象을 종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등의 off-line 事業者로 확대하였다(同 指針 第2條 4號).

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第22條, 個人情報保護指針 第6條). 個人은 事業者의 同意要請에 拒否할 수 있으며, 同意時 그 方法은 署名捺印, 電子署名, 電子郵便 또는 同意蘭에 대한 表示로 할 수 있다(同 指針 第5條 第2項). 또한 收集對象이 되는 個人情報는 目的達成에 必要最小限의 範圍內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事業者가 個人에게 情報를 要求時에는 반드시 目的 達成에 必須의 事項과 選擇의 事項을 명백히 구분하여 個人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同 指針 第8條 第3項). 하지만 思想·身上·過去의 病歷 등 個人的 權利·利益 및 私生活를 현저하게 侵害할 우려가 있는 個人情報²⁹⁾는 個人的 同意 또는 法令의 規定³⁰⁾에 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 收集이 制限된다(同法 第23條, 同 指針 第8條 第1項).

나. 個人情報의 保存, 利用 및 第3者에게의 提供

事業者는 個人的 同意를 얻어 收集한 情報에 대하여 정확한 形態로 保存하여야 한다(同 指針 第9條). 個人的 個人情報는 상시 변경되는 情報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情報에 대하여는 항상 최신의 것으로 保存하여야 한다. 하지만 事業者가 個人的 同意없이 최신의 情報로 保存하기 위하여 收集하는 것은 또 다른 個人情報侵害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情報의 正確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保存期間을 지정하고 定期的 更新을 制度化하여 당해 個人이 직접 情報를 갱신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³¹⁾ 또한 事業者가 個人的 情報를 利用함에 있어서 個人的 同意를 받은 收集目的의 範圍內에서 당해 事業者만 利用하여야 한다(同 指針 第9條). 따라서 收集目的의 範圍外에서 個人情報를 利用할 경우에는 반드시 事前에 個人的 同意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收集目的의 範圍內의 使用이라 할지라도 事業者의 變更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系列會社에게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경우에 個人的 事前同意를 얻은 후에만 利用할 수 있다(同法 第24條). 하지만 同法에서는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하거나 合併, 相續 등으로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경우에 事業者에게 事前同意가 아닌 事後 通知義務를 부과하고 있다(同法 第26條).

다. 個人情報保護措置講究 및 情報破棄

事業者는 個人的 個人情報를 취급함에 있어서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毀損되지

29) 個人的 基本의 人權을 侵害할 우려 있는 個人情報로서 個人情報保護指針에서는 人種 및 民族, 思想 및 信條, 出身地 및 本籍地, 政治的 性向 및 犯罪記錄, 健康常態 및 性生活를 들고 있으며(個人情報保護指針 第4條 第2項), 유럽연합 個人情報指針에서는 人種·民族, 政治的 性向, 宗教 또는 哲學의 信念, 勞動組合, 健康 또는 性生活에 관한 個人情報를 들고 있으며, ECOM의 電子商去來 個人情報保護指針에서는 思想·信條 및 宗教, 人種·民族·出身地·本籍地·身體·精神障礙·犯罪記錄, 勞動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에 관한 事項, 集團示威行爲 參加·請願權行使·政治的 權利行使에 관한 事項, 保健醫療 및 性生活를 예시하고 있다(情報通信部, 個人情報保護指針 解說書, 2000·7, 8~10面).

30) 法令에서 情報收集을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例가 「醫療法」 第20條이다. 「醫療法」 第20條에서는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從事者에게 원칙적으로 患者의 記錄에 대한 閱覽·寫本交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患者·그 配偶者·그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 지정하는 代理人)이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寫本交付 등 그 內容確認을 요구한 때에는 患者의 治療目的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醫療人은 동일한 患者의 診療上 必要에 의하여 다른 醫療機關에서 그 記錄·臨床所見書 및 治療經緯書의 閱覽이나 寫本의 送付를 요구한 때 또는 患者가 檢査記錄 및 방사선필름 등의 寫本 交付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31) 情報通信部, 앞의 資料, 21面.

않도록 시스템의 安全性 確保에 필요한 技術的·管理的 措置³²⁾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擔當하고 個人의 不滿을 處理하기 위한 個人情報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同法 第27條, 第28條). 또한 情報收集目的의 達成, 保存期間 또는 利用期間의 滿了時 情報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후의 情報를 保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個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同法 第29條).

라. 情報主體의 收集制限權

同法에서는 明文으로 이를 規定하고 있지 않지만 個人은 事業者의 個人情報收集 및 利用에 대한 同意要請에 대하여 拒絕權을 갖는다. 하지만 假想空間의 쇼핑몰을 利用함에 있어 情報提供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事業者의 同意要請에 대한 拒絕權은 有名無實하며, 중심이 되는 것은 情報收集制限權이 될 것이다. 즉, 事業者는 당해 目的의 達成에 필요한 最小限의 情報만을 요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도한 情報의 要求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制限할 수 있는 情報收集制限權이 個人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情報收集에 대한 個人의 同意는 개인적인 事由 또는 事業者의 目的以外的 使用 및 第3者에의 同意없는 流出 등이 發生한 경우에 언제든지 撤回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收集된 情報에 대하여 情報主體가 직접 자신의 情報에 대하여 確認할 수 있는 情報接近權이 인정된다. 이러한 情報接近權은 誤謬의 情報에 대한 訂正權과 削除權에 대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事業者는 언제든지 個人이 情報의 正確性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接近의 便利성과 無償 또는 低廉한 費用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個人이 情報閱覽 등을 통하여 자신의 個人情報의 誤謬를 알게 된 경우에 事業者에게 誤謬의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할 수 있다(同法 第30條). 이러한 個人의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事業者는 당해 請求權者가 진정한 情報主體 또는 代理人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技術的인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情報를 閱覽하여 이의 修正, 削除를 要請할 수 있다면 事業者는 情報의 侵害를 幫助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情報主體性을 確認한 후에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同 指針 第21條 第3項). 이와 더불어 情報通信網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공개를 目的으로 提供된 情報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을 侵害받은 個人은 당해 情報의 削除 또는 反駁內容의 掲載을 要請할 수 있으며, 事業者는 要請을 받은 즉시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이를 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同法 第44條).

마. 法定代理人의 權利

個人情報의 重要性에 관한 認識이 부족하여 情報를 評價하거나 眞僞를 판단할 수 있는 能力이 부족한 者에 대하여 情報提供을 要請하는 경우에 當事者 뿐만 아니라 他人의 個人情報까지 無制限의으로 流出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各國의 立法에서도 一定年齡 未滿의 者에게 情報를 收集할 경우에는 반드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게 하고 있으며³³⁾, 同法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情報를

32) 技術的 措置로서는 秘密番號 등을 利用한 保安裝置, 백신프로그램을 利用한 컴퓨터 바이러스 防止裝置, 암호알고리즘 등을 利用하여 네트워크 상에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電送할 수 있는 保安裝置,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利用한 接近統制裝置 등이 있으며, 管理的인 措置로서는 個人情報와 일반 데이터의 分離貯藏, 個人情報에 대한 接近權限의 付與 및 確認 節次 講究, 電算室 및 資料保管室 등을 保護區域으로 설정하여 出入管理節次 마련, 自然의 人爲的 個人情報 毀損에 대비한 情報複寫, 障礙發生時 代替節次 등이 있다(指針 第10條, 第11條; 情報通信部, 앞의 資料, 22~25面).

33) 情報通信部, 앞의 資料, 38~41面. 美國은 1999년 1월에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制定하여 만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個人情報를 收集, 利用 및 공개할 경우에 부모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日本의 ECOM 指針에서도 12세에서 15세

收集, 利用 또는 第3者에게 提供할 경우에는 반드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法定代理人은 兒童의 個人情報收集 및 利用, 第3者에의 提供에 대한 同意權을 가지며, 추후 同意에 대한 撤回權과 兒童의 情報에 대한 閱覽과 訂正을 요구할 수 있다(同法 第31條).

바. 損害賠償請求權

事業者의 不法의인 情報收集行爲, 目的以外的의 使用, 第3者에의 無斷 提供으로 인하여 個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個人 등의 同意權 撤回, 閱覽 및 訂正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하지 않아 損害가 發生한 경우에 事業者는 자신의 歸責事由가 없음을 立證하지 못하는 한 個人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同法 第32條). 또한 事業者가 個人情報處理 등을 他人에게 위촉한 경우, 위탁받은 者의 行爲로 인하여 被害가 發生한 경우에 事業者는 使用者責任을 부담한다(同法 第25條 第2項, 民法 第756條 第1項).

사. 法令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事業者의 情報收集時 提供하여야 할 事項

事業者가 個人정보를 收集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個人의 同意를 받아야 하며, 同意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事項을 個人에게 告知 또는 約款에 명시하여야 한다(同法 第22條). 하지만 告知 또는 명시하여야 할 事項에 가장 基本的인 事業者의 身元에 관한 事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事業者의 姓名, 住所, 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 등을 個人의 同意要請時에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

(2) 個人의 情報收集制限權의 明示

同法에서는 情報主體인 個人에게 기본적으로 情報收集의 同意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事業者에게 必要最小限의 情報收集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情報收集에 있어서 能動的인 地位에 있지 못하는 個人은 事業者가 요구하는 情報에 대하여 모두 提供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과도한 情報의 流出으로 인하여 個人의 被害를 誘發할 수 있는 可能性을 제시하게 되므로 個人情報侵害를 事前에 예방하기 위하여 個人에게 情報收集制限權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당해 目的達成에 不必要한 情報 提供 要求時 個人이 이를 拒否하고 필요한 情報만을 提供할 수 있는 權利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個人의 同意撤回權 및 訂正權 行使에 대한 通知義務 新設

個人이 個人정보收集에 同意를 한 後에 이를 撤回하거나 誤謬의 情報에 대하여 修正을 要請한 경우에 同法에서는 事業者에게 이에 따른 措置를 취하고 誤謬의 訂正時까지 情報의 利用을 禁止하는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同法 第30條). 하지만 個人에게 處理結果의 通知義務를 事業者에게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個人은 자신의 要請이 處理되었는가를 재차 確認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節次上的의 複雜性を 피하고 事業者의 義務履行與否를 個人이 쉽게 알 수 있도록 誤謬修正에 필요한 措置의 履行完了 후 通知義務를 事業者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4) 法定代理人의 同意權

同法에서는 情報判斷能力이 부족한 者의 個人정보를 保護하기 위하여 事業者가 兒童의 個人정보를

까지의 아동의 경우에는 父母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다.

收集하는 경우에 반드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기 위하여 事業者가 兒童에게 法定代理人의 最小한 個人情報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情報判斷能力이 不足한 者에게 他人의 情報提供를 요구하고 있으며, 個人情報收集時 本人의 同意를 요하는 同法 第22條의 規定과 相反된다. 따라서 兒童으로부터 수집한 情報를 통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도록 한 同法의 規定은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5) 營業의 讓受 등에 있어서 事前通知

事業者가 個人으로부터 同意를 얻어 情報를 收集하고 利用하는 경우에 당해 目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同意를 받은 事業者만이 이를 利用하여야 한다. 하지만 營業의 讓受, 會社의 合併 등의 경우에는 個人의 同意를 얻은 事業者의 變更이 發生한 경우이며, 個人의 情報가 원래의 目的以外에 사용될 可能性이 대단히 높다. 이 경우에 同法에서는 事後通知義務만을 부과하고 있어 個人情報侵害의 事前豫防에 미흡하다. 따라서 營業의 讓受, 會社의 合併 등의 事由가 發生하기 前에 그 사실을 個人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假想空間에 揭示하여 두거나 個別的으로 通知하여 個人이 자신의 個人情報의 使用에 대한 同意를 撤回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³⁴⁾

2. 制度上的 個人情報保護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³⁵⁾는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上的 個人情報 保護規定을 준수하고 있는지 與否를 監視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情報通信部傘下 公共機關인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個人情報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所定の 樣式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個人情報保護와 관련된 궁금한 事項이나 自身の 權益內容에 관한 事項을 상담 받을 수 있다. 申告 接受된 事項은 情報通信部の 調査計劃에 의거하여 當事者를 調査하게 되며, 法規違反 與否 決定 및 違反事項 程度에 따라 過怠料 賦課 및 搜查 依頼를 한 후, 措置結果를 申告者에게 통보하게 된다.

나.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1) 設置의 根據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는 情報主體와 事業者間의 個人情報에 관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第33條에 근거하여 韓國情報保護振興院內에 2001년 7월 1일부터 설치되었다.

(2) 個人情報侵害 救濟節次

① 申告接受

事業者의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등에 관한 法律上 個人情報保護 規定의 違反行爲로 인한 個人情報侵

34) 同旨; Kate Scribbins, Ibid, 9面; 李炯珪, 인터넷 企業의 營業讓渡·合併과 個人情報의 保護, 인터넷법률 第4號, 法務部, 2001·1, 104~105面.

35) <http://www.cyberprivacy.or.kr>.

害行爲에 대하여 個人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 인터넷, PC통신의 신고란 및 팩스, 郵便 및 直接 訪問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利用約款 第5條 第3項).

② 申告處理

申告人의 接受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個人情報侵害의 深刻性·重大性 與否를 파악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當事者間 和解 또는 是正勸告의 受諾을 事業者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當事者間 和解가 成立하지 않거나 중대한 事案에 대하여는 書類提出要求와 함께 現場調査를 실시하여 是正措置命令, 履行勸告, 過怠料賦課 및 檢察 또는 警察에 搜查依頼를 함과 더불어 紛爭調停委員會로 移管한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利用約款 第5條 第4項 別표3).

③ 紛爭調停

㉞ 調停委員會의 構成

紛爭調停委員會는 學界, 法曹界, 公職者, 非營利民間團體에서 推薦한 者 등이 포함된 15인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情報通信部 長官이 任命한다(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第33條 第2項, 第5項). 또한 紛爭調停委員會의 효율적인 調停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되는 小委員會의 構成을 同法 施行令 改正案에서 인정하고 있다(同法 施行令 改正案 第13條 第1項).

㉟ 調停節次

紛爭調停委員會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同法 第36條 第2項). 調停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에 필요한 자료를 當事者에게 要請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紛爭當事者 또는 參考人으로 하여금 調停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하게 할 수 있다(同法 第37條). 만일 調停節次의 進行途中에 當事者가 法院에 訴를 提起한 때에 調停委員會는 調停處理를 中止하고 이를 相對方에게 通報하여야 한다(同法 第39條 第2項).

㊱ 調停의 效力

調停委員會는 調停案을 作成한 후, 즉시 當事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15일 이내에 受諾與否를 調停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후 當事者가 調停案을 受諾한 경우에 調停委員會는 調停調書を 작성하여 委員長 및 當事者가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紛爭에 대하여 當事者間에 調停書와 동일한 內容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同法 第38條). 만약 當事者가 調停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거나 同 期間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調停은 不成立으로 되며, 當事者는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3) 個人情報紛爭調整制度의 改善方案

① 電子的 方式을 통한 節次進行

현재 個人情報에 대한 調停은 온라인을 통하여 申請할 수 있지만 節次의 進行에 대하여는 온라인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當事者가 調停節次에 참가하여 意見陳述을 하기 위하여는 직접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에 방문하여야 한다. 이 점은 迅速하고 便利하게 紛爭을 解決한다는 調停制度의 趣旨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調停節次 역시 電子的 方式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³⁶⁾

② 調停案에 대한 受諾與否의 未通報時 效果

紛爭에 대한 當事者間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는 調停案을 當事者에게 제시하여 15일내에 受諾與否를 通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期間內에 受諾與否에 대한 意思表示가 없을 경우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아 同 期間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調停案에 대하여 拒否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는 調停制度가 迅速한 紛爭解決制度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消費者紛爭調停制度와 같이 同 期間內에 拒否의 意思를 表示하지 않은 경우에는 受諾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調停委員會가 當事者에게 調停案을 送付할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內容을 함께 첨부하는 것으로 改正할 필요가 있다.

V. 結 論

假想空間은 현실 세계와 달리 情報의 收集 또는 利用이 자유로운 반면에 情報侵害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國際機構를 비롯한 世界 各國 및 우리 나라 역시 法令을 정비하고 制度를 신설하여 情報主體의 情報侵害를 救濟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는 情報收集時 事業者 身元의 未提供, 營業의 讓受 등에 있어서 事後通知, 아동을 통한 法定代理人에 관한 情報收集, 不正確한 個人情報의 修正 또는 削除要請에 대한 措置完了後의 通知義務 不存在 등의 問題點이 존재하고 있으며, 制度의인 面에서는 신속한 紛爭解決을 위한 電子的 方式을 통한 節次參與의 不存在, 受諾看做規定의 不存在 등이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補完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個人情報侵害에 대한 法令과 制度上의 救濟方案을 완비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보다도 情報主體인 個人이 情報侵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個人은 첫째, 會員加入 또는 商品 등의 購入에 있어서 個人情報를 事業者에게 提供時에 事業者가 제시한 個人情報에 관한 約款의 內容을 반드시 숙지하고 당해 約款의 內容을 複寫 또는 다운받아서 저장하여야 한다.³⁷⁾ 둘째, 個人은 會員加入 등에 있어서 事業者가 요구하는 情報가 당해 目的의 達成에 必須의인 事項인가의 與否를 반드시 確認하여야 한다. 事業者側에서는 個人의 個人情報도 중요한 資産의 一部이기 때문에 더 많은 個人情報 收集을 위하여 個人에게 目的達成에 필요한 情報를 초과하여 요구한다. 하지만 目的達成以外의 情報提供은 個人의 個人情報侵害의 첫 단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個人은 事業者가 過多한 情報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會員加入 등을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會員制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서 個人이 단일의 ID와 秘密番號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노출의 危險性이 대단히 높다. 특히 公共場所나 PC방 등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컴퓨터의 쿠키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에 타인이 쉽게 ID와 秘密番號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個人은 주기적으로 ID와 秘密番號를 變更하여야 하며, 公共場所 등에서 利用한 경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秘密番號를 生成할 경우에는 타인이 類推하기 쉬운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 등의 使用

36) 同旨; 鄭完洛, 電子去來에 있어서 個人情報侵害에 대한 法的 救濟, 인터넷법률 第10號, 法務部, 2002 · 1, 102面.

37) 韓國消費者保護院 사이버소비자센터, 個人情報保護 및 스팸메일에 대한 利用者 意識調査, 2000 · 12, 35面.

을 금하여야 한다. 넷째, 個人이 個人情報를 提供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쇼핑몰에서 個人情報管理를 擔當하고 있는 責任者의 身元과 連絡處 등을 반드시 確認하여야 한다. 이는 유사시에 個人情報의 流出이 되었거나 流出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管理責任者에게 연락하여 迅速한 情報侵害의 救濟 및 豫防措置의 講究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個人은 쇼핑몰 등을 利用함에 있어서 쇼핑몰의 個人情報保護政策에 대하여 반드시 確認하여야 한다. 따라서 個人이 쇼핑몰의 個人情報保護政策을 인식하기 곤란하거나 이에 대한 事項을 제시하지 않은 쇼핑몰 등의 利用은 자제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情報提供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情報主體가 脫會하거나 情報의 削除를 요구한 경우에 반드시 자신의 情報가 削除되었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일부 쇼핑몰의 경우에 個人이 脫會한 후에도 相當期間 個人의 個人情報를 保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確認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 情報主體인 個人은 假想空間을 이용함에 있어 個人情報에 관한 被害를 발생하지 않도록 事前에 豫防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연수, 쿠키를 통한 온라인 추적과 個人情報侵害, 情報通信部, 2001 · 1.
- 金日煥, 美國 個人情報保護法規에 관한 研究, 美國憲法研究 第10號, 美國憲法學會, 1999.
- 柳煌彬, 디지털시대의 個人情報保護技術, 인터넷법률 第4號, 法務部, 2001 · 1.
- 宋東洙, 情報化社會에서의 個人情報保護, 法學論叢 第24輯, 檀國大學校 法學研究所, 2000.
- 玉武錫, 電子去來基本法上の 紛爭調停制度, 인터넷법률 第8號, 法務部, 2001 · 9.
- 李炯珪, 인터넷 企業의 營業讓渡 · 合併과 個人情報의 保護, 인터넷법률 第4號, 法務部, 2001.
- 鄭完溶, 電子去來에 있어서 個人情報侵害에 대한 法的 救濟, 인터넷법률 第10號, 法務部, 2002 · 1.
- 조광희, 情報社會에 있어서 個人의 情報公開과 프라이버시 保護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中央大言論研究 第6輯, 1997 · 12.
- 情報通信部, 個人情報保護指針 解說書, 2000 · 7.
- 韓國消費者保護院 사이버소비자센터, 個人情報保護 및 스팸메일에 대한 利用者 意識調査, 2000 · 12.
- Michael M. Sax,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Toronto, OSGOODE HALL LAW SCHOOL, 2000 · 5.
- Masons, Handbook on Cost Effective Compliance with Directive 95/46/EC, 1998 · 8.
- Kate Scribbins, Privacy@net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Consumer privacy on the internet, London, Consumers International, 2001 · 1.
-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nventory of Instruments and Mechanisms contributing to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ECD Privacy Guidelines on Global Networks, Head of Publication Services, Paris, OECD Publications, 1999 · 5.
- ICCP, Implementing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 focus on the Internet, Head of Publication Services, Paris, OECD Publications, 1998 · 9.